



**본인은 다음 사항을 자가 신고 및 USDA/TEFAP 식품 수령 확인을 통해 증명합니다.**

- 본인은 아래에 명시된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(TEFAP) 자격 기준을 검토했습니다.
- 모든 가구 구성원은 어떤 형태의 공공 지원을 받거나, 가구의 월별 총 소득이 자격 기준표에 제시된 소득 지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본인 및 모든 가족구성원은 미주리(Missouri) 거주자입니다.
- 본인 및 모든 가족구성원은 당월에 TEFAP 식품을 두 번 이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.

**아래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.**

- 자격요건이 맞지 않음에도 식량을 수령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TEFAP 식품은 판매, 교환, 양도하거나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섭취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**자격요건**

수령가능한 가구는 아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로 TEFAP의 수입기준 지원요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.

1) 가구 구성원 모두가 하나 이상의 공공 지원을 받거나 (또는 지원금에 포함되는 경우) 공공 지원 가구에 해당합니다.

2) 공공 지원 가구로 자격이 없는 경우, 가구의 총 소득이 해당 가구 규모에 적용되는 최대 소득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(NPA)

참고: 1)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는, 2) 항목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.

**자격요건 지침**  
(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)

공적 지원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
연방 빈곤 기준 185%	
가구수	월수입
1	\$2,461
2	\$3,337
3	\$4,212
4	\$5,088
5	\$5,964
6	\$6,839
7	\$7,715
8	\$8,591

8인 가구수 이상일 경우 1인 추가 시, \$876

- 임시 지원 (TA/TANF)
- 푸드 스탬프/SNAP
-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지원(LIHEAP)
- 미주리 주 건강 보험 (전, 메디케이드: Medicaid)
- 공공 주택 지원(HUD, Section 8)
- 시각 장애인 추가 지원(SAB)
- 시각 장애인 연금(BP)
- 보충적 소득 보장(SSI)
- 여성, 영유아 및 아동 지원금(WC)

참고: 메디케어, 사회 보장, 사회 보장 장애 보험 (SSDI), 실업 보상 및 VA 혜택은 공공 지원의 형태가 아닙니다.

연방 인권법과 미국 농무 부(USDA) 인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, 본 기관은 인종, 피부색, 출신 국가, 성별(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), 장애, 연령 또는 이전 인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보복 행위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
해당 지원사업정보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지원사업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통신 수단(예: 점자, 큰 글씨, 오디오 테이프, 미국 수화)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해당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연락하거나 USDA TARGET 센터(202) 720-2600(음성 및 TTY)으로 연락하거나 연방 릴레이 서비스(800) 877-8339를 통해 USDA에 연락해야 합니다.

지원사업연관 차별 신고를 접수하려면 신고인은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AD-3027 양식, USDA 프로그램 차별 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: <https://www.usda.gov/sites/default/files/documents/USDA-OASCR%20P-Complaint-Form-0508-0002-508-11-28-17Fax2Mail.pdf>, 모든 USDA 사무소에서 받거나, (866) 632-9992로 전화하거나, USDA 앞으로 편지를 보내 작성할 수 있습니다. 편지에는 신고인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와 인권 침해 혐의의 성격과 날짜에 대해 인권 담당 차관보(ASCR)에게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한 차별 행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작성된 AD-3027 양식 또는 편지는 다음 방법으로 USDA에 제출해야 합니다.

- 우편접수:  
미국 농무부  
인권 담당 차관보 사무실  
1400 Independence Avenue, SW  
Washington, D.C. 20250-9410; 또는
- 팩스:  
(833) 256-1665 또는 (202) 690-7442; 또는
- 이메일:  
[program.intake@usda.gov](mailto:program.intake@usda.gov)

본 기관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**USDA 식품 수령 신청서 사용 설명서**  
**(양식 FD-15A)**

USDA 식품 수령 신청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FD-15A-1부에는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과 USDA 민권 차별 금지 성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FD-15A-2부에는 신고서와 신청자 및 그 가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**식량 배급소 직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**

1. 양식 FD-15A 1부와 2부를 접수 구역에 함께 비치하십시오. 신청자는 2부에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자격 기준을 **반드시** 확인해야 합니다.
2. FD-15A 2부 양식에 식량 배급소의 이름과 배포 그리고, 월 및 연도를 입력하십시오.
3. 2부에서 "승인된 공공 지원," "승인된 비 공공 지원" 또는 "거부" 상자에 표시하여 가구의 자격 여부를 입증하십시오.
  -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공공 지원을 받는 경우, "승인된 공공 지원-PA" 상자에 표시하십시오.
  - 가구 구성원 중 공공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, 해당 가구는 지원자격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가구가 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, "승인된 비 공공 지원-NPA" 상자에 표시하십시오.
  - 가구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"거부" 상자에 표시하십시오.

**세대주 또는 수령 위임 대리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.**

1. FD-15A 1부의 응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검토하세요.
2. FD-15A 2부의 다음 사항을 완성하세요: 가구 규모, 수혜자 이름, 군/우편번호, 날짜.